

개인정보관리규정

- 제정 : 2013. 5. 15.
- 개정 : 2015. 5. 13.
- 개정 : 2016. 3. 9.
- 개정 : 2019. 3. 1.
- 개정 : 2019. 6. 18.

제1조(목적) 개인정보관리규정(이하 “본 규정”이라 한다)은 「개인정보보호법」과 같은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 제정된 것으로 수원과학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가 취급하는 개인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누출, 변조, 훼손, 오·남용 등이 되지 아니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본 규정은 서면, 정보통신망 등의 수단을 통하여 수집 및 이용, 제공되는 등 개인정보가 처리되는 경우에 적용되며, 이 같은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내부 교직원 및 외부업체 직원에 대해 적용된다.

제3조(용어의 정의) 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정보”란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처리”란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訂正),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破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3.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4.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영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
5. “개인정보보호책임자”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거나 업무처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자를 말한다.
6. “개인정보보호담당자”란 개인정보보호책임자를 보좌하여 개인정보 보호업무에 대한 실무를 총괄하고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7. “개인정보 책임자”란 개인정보보호책임자를 보좌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모든 부서의 장 또는 팀장을 말한다.

4-2-35 개인정보관리규정

8. “개인정보 담당자”란 개인정보 책임자를 보좌하여 개인정보 보호업무에 대한 실무를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9. “개인정보취급자”란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직접 개인정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와 그 밖에 업무상 필요에 의해 개인정보에 접근하여 처리하는 모든 자를 말한다.
10.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이란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데이터베이스시스템을 말한다.
11. “개인정보파일”이란 모든 부서의 단위 업무 또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파일 중에서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파일을 말한다.
12.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일정한 공간에 설치하여 지속적으로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일체의 장치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 3조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및 네트워크 카메라를 말한다.

제4조(개인정보관리규정의 수립 및 승인) ① 본 규정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 및 '규정심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개인정보보호담당자는 본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전반적인 사항을 포함하여 규정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③ 본 규정은 법률을 비롯한 상위조직 및 관련 기관의 정책과 연계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 ④ 본 규정의 구체적인 시행을 위한 지침, 절차를 수립 할 수 있으며, 관련 문서 간에는 일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 ⑤ 규정 시행에 따른 운영기록을 생성하여 유지하여야 한다.
- ⑥ 중대한 보안사고 발생, 새로운 위협 또는 취약성의 발견, 개인정보보호 환경에 중대한 변화 등이 발생할 경우에 제·개정하여야 한다.
- ⑦ 개인정보보호담당자는 정기적으로 규정 및 정책 시행문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본 규정의 개정안을 작성하여 개인정보보호책임자에게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된 규정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 및 '규정심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개인정보 관리 규정의 공표) ①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제4조에 따라 승인한 본 규정을 공표한다

- ② 본 규정은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는 방법으로 비치하여야 하며,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지하여야 한다.

제6조(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지정) 본교의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당연직으로 행정사무 총괄자가 된다.

제7조(개인정보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보호담당자의 의무와 책임) ①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전체 구성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개인정보보호 업무 추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개인정보관리규정의 수립 및 개정에 관한 사항
3.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이행 총괄
4. 개인정보처리방침의 수립·변경 및 시행
5. 전체 구성원으로부터 제기되는 개인정보에 관한 고충이나 의견의 처리 및 감독 총괄
6. 전체 구성원 및 개인정보 취급업무 수탁자 등에 대한 교육 총괄
7.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제반 조치의 시행 총괄
8. 기타 전체 구성원의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사항

②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관련 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개인정보 관리 주관 부서의 직원 중 1인을 개인정보보호담당자로 임명한다.

③ 개인정보보호담당자는 개인정보보호책임자를 보좌하여 개인정보 보호 업무에 대한 실무를 총괄하고 관리한다.

제8조(개인정보책임자 및 개인정보담당자의 의무와 책임) ① 개인정보책임자는 전체 구성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이행을 총괄한다.

② 개인정보책임자는 개인정보취급자를 수시로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책임자는 개인정보 관련 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부서의 개인정보취급자 중 1인을 개인정보 담당자로 임명한다.

④ 개인정보 담당자는 개인정보 책임자를 보좌하여 개인정보 보호 업무에 대한 실무를 총괄하고 관리한다.

⑤ 개인정보 담당자는 상위기관에서 요청하는 개인정보 관련 현황 자료를 작성 및 제출한다.

제9조(개인정보취급자의 범위 및 의무와 책임) ① 개인정보취급자의 범위는 본교 내에서 전체 구성원들의 개인정보 수집, 보관, 처리, 이용, 제공, 관리 또는 파기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② 개인정보취급자는 전체 구성원의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역할 및 책임을 이행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 보호 활동 참여
2. 개인정보 관리 규정의 준수 및 이행
3.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이행
4. 전체 구성원 또는 제3자에 의한 위법, 부당한 개인정보 침해행위에 대한 점검 등
5. 기타 전체 구성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의 이행

제10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 본교의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 하는 경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및 관리규정」을 따른다.

제11조 (개인정보 보호지침) 이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각 조항의 세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을 준용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5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5년 5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6년 3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9년 6월 18일부터 시행한다.